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
》 HD현대중공업	입안부서 Issuing Dept.	표 준 번 호 Standard Number	총 페이지 Total Pages
	법무팀	HHIS-AA-1501	13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입 안 Prepared by	검 토 Reviewed by	승 인 Approved by
책임 박은희	수석변호사 김해성	전무 김태정
Ma	the	762420
10/29	10/29	10/29

	차수 Rev. No.	개정일자 Date of Revision	내 용 Description	부서 Department	입안 Prepared	검토 Reviewed	승인 Approved
개	0	2024.10.	최초 제정	법무팀	책임 박은희	수석변호사 김해성	전무 김태정
정							
R							
V 1							
S 1 0							
N S							
Rel	상위표준/규격 Related standards/rule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						

	H D 현대중공업 표준			
_	HD HHI Standards			
> 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	표 준 번 호	개정차수	
<b>2</b>	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## 제 1 장총 칙

#### 1. 적용범위

본 세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.

## 2. 목 적

본 세칙은 HD 현대중공업㈜(이하 "회사")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1) "공정거래 자율준수"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(이하 "자율준수"라 한다).
- (2) "공정거래 관련 법령" 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의 경쟁법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령을 말한다.
- (3) "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"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(이하 "CP"라한다).

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
<b>▶</b> 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Classification	표준번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경영기본	HHIS-AA-1501	0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- (4) "자율준수관리자"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(5) "CP 전담부서"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#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### 4. 자율준수관리자

- 4.1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
  - 4.1.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하다.
  - 4.1.2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  - 4.1.3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4.1.2 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전담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## 4.2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

- 4.2.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4.2.2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,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

	H D 현대중공업 표준		
_	HD HHI Standards		
> 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	표 준 번 호	개정차수
	Classification	Standard Number	Revision Number
	경영기본	HHIS-AA-1501	0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않아야 한다.

- 4.2.3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4.2.2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,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.
- 4.2.4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4.2.5 회사는 본 세칙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# 4.3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

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(1)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- (2)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
- (3)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
- (4)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
- (5)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
- (6)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
- (7)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
- (8)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표 준 번 호 개정차수 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 Numbe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- (9)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- (10)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
- (11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4.4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

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(1)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- (2)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 요구권
- (3)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
- (4)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#### 5. CP 전담부서

#### 5.1 조직의 구성

- 5.1.1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전담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5.1.2 CP 전담부서의 점검업무 수행자는 입사 2 년 이상자로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5.1.3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CP 전담부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.
  - (1)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(2)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
  - (3)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

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표 준 번 호 개정차수 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 Numb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- 5.1.4 CP 전담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.
- 5.1.5 CP 전담부서의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### 5.2 조직의 역할

- 5.2.1 CP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 - (1)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
  - (2)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,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
  - (3)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
  - (4)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
  - (5)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
  - (6)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
  - (7)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
  - (8) 공정거래 관련 반기 1회 모니터링 및 점검
  - (9)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

## 6. 임직원

- 6.1 임직원의 의무
  - 6.1.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6.1.2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전담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.
  - 6.1.3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

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표 준 번 호 개정차수 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 Num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.

# 7. 대표이사

# 7.1 대표이사의 역할

- 7.1.1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7.1.2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CP의 운영

#### 8. 자율준수 의지선언

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 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하며, 이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# 9. 자율준수편람

- 9.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세칙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- 9.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표 준 번 호 개정차수 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 Number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9.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주기적인 개정 검토(매월) 및 개정(반기 1회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 10. 교육

- 10.1 CP 전담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- (1)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등 대상 교육
  - (2) 공무, 공사, 관리, 안전 등 현장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
  - (3)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
  - (4)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
  - (5)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  - (6) 대면, 온라인, 동영상,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
- 10.2 CP 전담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
- 10.3 CP 전담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가중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.
- 10.4 CP 전담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10.5 CP 전담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, 만족도, V.O.C, 참석율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,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.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표 준 번 호 개정차수 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 Number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- 10.6 교육을 하는 전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,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 년 이상,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, 일반강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(1) 시공관리, 제작관리,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
  - (2) CP 전담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(CCP) 2 급 이상 자격 소지
  - (3)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

# 11. 문서의 관리

- 11.1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 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.
- 11.2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세칙에 따른다.

#### 12. 위험성평가

- 12.1 CP 전담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,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12.2 위험성 평가는 분기 1 회 실시하고, 리스크 등급은 상, 중, 하 3 단계로 구분한다.
- 12.3 리스크 등급이 '중'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리스크를 회피, 경감 또는 제거한다.

# 13. 모니터링 및 점검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표 준 번 호 개정차수 Classification Standard Number Revision Number			
	경영기본	HHIS-AA-1501	0	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	

- 13.1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13.2 CP 전담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및 부서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13.3 수감부서는 CP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- 13.4 CP 전담부서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, 업무절차개선 등을 취할 수 있다.
- 13.5 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시공관리, 제작관리,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
- 13.6 CP 전담부서 직원은 모니터링 및 점검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1)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.
  - (2)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.
  - (3)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.
  - (4)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점검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(5)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권위적·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,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,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Classification	표 준 번 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경영기본	HHIS-AA-1501	0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(6) 점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 14. 제보시스템의 운영

- 14.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4.2 제보시스템은 기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. 익명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14.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15. 공시

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.

## 16. 운영평가

- 16.1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하고,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16.2 운영평가에는 주요 법령의 비준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6.3 운영평가자는 CP 전담부서에서 1 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(CCP) 2 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Classification	표 준 번 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경영기본	HHIS-AA-1501	0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 17.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
#### 17.1 제재조치 요구

- 17.1.1 본 운영세칙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 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.
- 17.1.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#### 17.2 제재의 워칙과 절차

- 17.2.1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17.2.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17.2.3 제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,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CP 전담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.
- 17.2.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세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

_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Classification	표 준 번 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경영기본	HHIS-AA-1501	0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17.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
  - 17.3.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전·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나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  - (1) 경쟁법 위반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
    - (2)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조사 및 심의·의결(이하 '조사등'이라 함)에 협조한 자
  - 17.3.2 17.3.1 항에 따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.
    - (1) 경쟁법 위반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
    - (2) 회사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
    - (3) 경쟁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,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등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
    - (4) 그 경쟁법 위반행위를 중단했을 것
  - 17.3.3 17.3.1 항에 따라 제재조치나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- (1) 회사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
    - (2) 회사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

	H D 현대중공업 표준 HD HHI Standards		
》HD현대중공업	대분류명 Classification	표 준 번 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경영기본	HHIS-AA-1501	0
표 준 명 Name of Standard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		

- (3)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경쟁법 위반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
- (4)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
- (5) 자진신고한 경쟁법 위반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

## 18. 임직원 포상

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- (1) CP 점검 우수 조직
- (2) 공정거래 실천 우수자

## 19. 기타

- 19.1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,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.
- 19.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19.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은 연 1 회 개정하며,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하지 않는다.